

#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2010. 12. 02

□ 제정 : 2013. 03. 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제규정관리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 위원수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회는 교직원(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), 학생, 관련 전문가(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제외)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되, 학부모 또는 동문(同門)을 포함 할 수 있다.

④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정수(定數)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,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,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. 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①등록금 산정을 심의 한다.

②등록금 산정의 기초자료 및 관련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학교의 장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③등록금 산정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